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7. 7.(목) 15: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 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1-40-139)

○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19차 위원회('11.3.23) 보고 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편성비율 및 협찬고지 관련사항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확대(제57조제1항)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고시위임 근거 마련(제57조제7항)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관하여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제58조제5항)
- 자막광고로 분류하지 않는 항목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 안내 또는 고지'를 추가(제59조제2항제1호라목)
-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고지를 원칙적 허용하되, 중소 외주 제작사 보호 등을 위해 서울 권역의 지상파방송사업자(KBS, MBC, SBS)의 TV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제60조제1항제3호·제3호의2)

※ 당초 입법예고안 중 '편성비율 고시 관련 문화부와 합의조항을 폐지' 관련 조항은 삭제

② 기타사항

- SO가 특정 PP에 임대하는 채널수를 제한(예. TV방송채널수의 20/100이내)함에 있어, PP의 범위에 특수관계자도 포함됨을 명시(제53조제2항제2호라목)
- 소속기관(중안전과관리소) 위임업무에 다음 사항을 추가
 -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법 제18조제1항), 과징금 처분(법 제19조제1항), 설비개선명령(법 제81조), 전송선로설비 이용약관 신고(법 제82조), 자료제출 요구(법 제98조제1항), 시설의 개선 명령(법 제99조제2항), 청문 실시(법 제101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법 제71조)

※ 방송법시행령 제56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6항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일부생략) 구별기준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

-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1(처분기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최대액출자자 변경을 받은 경우도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 제 17조 관련)

※ 처분기준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당초 입법예고안 중 '부정한 방법으로 최대액출자자 변경을 받은 경우'에도 권익위 의견을 수용하여 다른 업무정지 처분기준과 같이 업무정지 대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별표(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에 포함

(2) 일간신문의 부수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 (2011-40-140)

○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에 대한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지정기관 및 기간

지정기관	지정기간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1년 (2011. 7. 20. ~ 2012. 7. 19.)

- 부수 인증기관의 역할 :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가구대상, 영업장대상, 가판으로 구분)를 인증
- 지정기준 : 신문의 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방송법시행령 제4조제2항)

(3) 지상파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주)에스비에스와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양사 의견청취 및 행정조치에 관한 건 - (2011-40-141)

○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에스비에스 및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수도권역의 SBS HD방송 송출 중단(총 48일 : '11. 4. 27. ~ '11. 6. 14.)으로 위성방송 수도권역 HD방송 시청자(약 48만)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주)에스비에스 및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게 제1안과 같이 '서면경고' 처분을 의결함

○ 주요내용

① 방송법 위반사항

- (주)에스비에스 :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분쟁을 사유로 총 48일간 수도권역 HD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함으로써 위성방송 수도권역 HD방송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함
-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 : 유료시청자를 모집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방송 사업자로서 유료시청자의 시청권을 적극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도권역의 SBS HD방송 송출중단 사태를 상당 기간(총48일) 방치함으로써 수도권역 HD방송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함

② 서면경고 내용

- 재송신 분쟁으로 위성방송 수도권역에 SBS HD방송 송출이 48일간(2011. 4. 27. 06:00 ~ 2011. 6. 14. 06:00) 중단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고사항

(1)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국민관심행사 중계가능 방송사 사전 지정, 국민관심행사 가시청가구 비율 상향 일원화 등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방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 ① 보편적시청권 정의 구체화 : 국민관심행사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방송수단의 범위, 유·무료 여부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25호(보편적시청권)의 보편적시청권의 정의를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여 기존 시청수단에 더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함(법 제2조제25호 개정)

※ 보편적시청권 정의(방송법 제2조제25호)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

- ② 중계 가능 방송사 사전 지정 및 관리 : 현재는 국민관심행사를 중계방송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인지 여부를 가시청가구비율 충족여부로 사후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송커버리지 논란을 불식하고 방송사와 방통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계 가능 방송사업자의 요건을 미리 규정하여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고시(법 제76조의6 신설, 제108조 개정)

③ 가시청가구비율 상향 일원화 : 현재는 국민관심행사의 가시청가구비율이 90/100 (올림픽·월드컵), 75/100(이외의 행사)으로 양분되어 있으나(시행령 제60조의3), 시행령에 있는 가시청가구비율 관련 내용을 법으로 상향입법하는 동시에 90/100 이상의 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일원화

④ 사후장치 강화

- 금지행위 상향입법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예측가능성 측면과 타법 선례에 따라 상향입법(법 제76조의3 개정)

- 금지행위 추가신설 : ▲ 가시청가구비율(90/100)이상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일반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중계방송권자가 사전 지정 방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하나 이상의 사전 지정 방송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 방송의 공공성, 채널 선택권 보호 측면에서 국민관심행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50/100 이상 편성하는 행위(법 제76조의3 개정)

- 금지행위 세부기준 마련 : 금지행위를 법으로 상향입법 후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세부기준을 방송법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화(법 제76조의3 개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 정당한 사유, 실시간 방송, 뉴스 자료화면 제공기준 등 세부기준을 명확화

⑤ 국민관심행사 대상경기 조정 : 보편적시청권의 대상인 국민관심행사의 범위가 전 경기로 되어있는 등 광범위하여 국민관심도·해외사례에 맞추어 FIFA 월드컵은 한국대표팀 출전경기 및 개막전·준결승·결승전으로, 야구 WBC는 한국대표팀 출전경기 및 준결승·결승전으로 축소·조정(고시 개정)

(2)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미비점 개선,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허용, 공동체 라디오의 허가유효기간 일원화 등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 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① 보편적시청권 관련

- 보편적시청권 정의 구체화 : 국민관심행사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방송수단의 범위, 유·무료 여부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25호(보편적시청권)의 보편적시청권의 정의를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여 기존 시청수단에 더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함(법 제2조제25호 개정)

※ 보편적시청권 정의(방송법 제2조제25호)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

- 중계 가능 방송사 사전 지정 및 관리 : 현재는 중계방송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인지를 가시청가구비율 충족여부로 사후 판단하고 있으나, 방송커버리지 논란을 불식하고 방송사와 방통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계 가능 방송사업자의 요건을 미리 규정하여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고시(법 제76조의6 신설, 제108조 개정)
- 가시청가구비율 상향 일원화 : 현재는 국민관심행사의 가시청가구비율이 90/100(올림픽·월드컵), 75/100(이외의 행사)으로 양분되어 있으나(시행령 제60조의3), 시행령에 있는 가시청가구비율 관련 내용을 법으로 상향입법 하는 동시에 90/100 이상의 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일원화
- 금지행위 상향입법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예측가능성 측면과 타법 선례에 따라 상향입법 필요(법 제76조의3 개정)
- 금지행위 추가신설 : ▲ 가시청가구비율 이상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일반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중계방송권자가 사전 지정 방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하나 이상의 사전 지정 방송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 방송의 공공성, 채널 선택권 보호 측면에서 국민관심행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50/100 이상 편성하는 행위(법 제76조의3 개정)
- 금지행위 세부기준 마련 : 금지행위를 법으로 상향입법 후 위임 근거를 마련, 세부기준을 방송법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화(법 제76조의3 개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②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

-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 :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로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
- 간접광고 정의 개정 : 간접광고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서비스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로 개정
- 간접광고 허용주체 확대 : 기존의 방송사업자에 추가하여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방송분쟁조정대상,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대상, 제제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

③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 결격사유 근거 마련 : 결격사유(외국인,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근거 마련

- 허가유효기간 단일화 : 방송법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무선국 관련 허가 유효기간을 전파법령으로 일원화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7. 12(화).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7:35)